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주찬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관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과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수급권자'에 대한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2008년 7월 30일 동 조례 전부개정시 정비 누락된 '배수설비 설치공사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모순을 바로잡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오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